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및 발의일자 : 김영헌 의원 등 7명(2026. 10. 01.)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07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34회 포항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-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(2026. 10. 16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영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경상북도가 포항시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원의 구분 및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,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정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편성하던 금액(舊 조정교부금)을 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변경함(안 제3조)

❍ 방사능방재, 재난의 안전관리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정비함(안 제4조)

3. 제안근거

❍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 및 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

❍ 「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5조(세출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명권)

❍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포항시에 배분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닌

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편성하고,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방사능방재 및 재난·안전관리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주요 내용으로

- **안 제1조에서** “조정교부금”이라는 문구를 “경상북도로부터 포항시에 배분되는 금액”으로 수정
- **안 제3조에서**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편성하던 금액을 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변경
- **안 제4조에서**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정비

❍ 관련법령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와 관련하여,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1항은 시·도지사가 시·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 등의 일정 비율을 관할 시·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면서, 그 산정 대상 도세에서 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있음.
 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은 재정력 격차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교부금과 재원의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되며, 현행 조례가 이를 ‘조정교부금’으로 표기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법령상 용어 및 재원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3조와 관련하여, 종전에는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분배금을 시·군조정교부금(308-04)으로 교부함에 따라 이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처리하여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나, 향후에는 기타재원조정비(308-06)로 교부할 예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4조와 관련하여, 현행 “‘방사능 및 재난안전·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”을 “방사능방재”와 “재난·안전관리”로 구분하여 구체화한 것으로,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취지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출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.

❍ 종합검토 결과,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상 조정교부금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금을 구분하여 법령상 용어와 재원 구조를 정비하고, 배분금을 특별회계의 직접 세입으로 편성하여 재원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, 세출 대상 사업을 방사능방재 및 재난·안전관리 분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